신안산대학교	교무회의 규정	규 정 번 호	4-1-40
		제 정 일 자	2017. 12. 29.
		개 정 일 자	2024.3.20.
		책임부서/팀·계	교무처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전반적인 학사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) 교무회의는 총장, 부총장, 처장, 부설기관장, 학과장으로 구성한다. <2021.8.20. 개정> <2023. 3. 30. 개정>

제3조(의장) ① 교무회의 의장은 총장으로 한다.

② 의장의 부재 시에는 의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4조(임기) 임기는 보직재임 기간으로 한다.

제5조(기능) 교무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제반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
2.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6조(회의) ① 교무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.

② 회의는 재적인원 2/3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
③ 학과장은 필히 참석 하여야 한다. <2024.2.22. 제정>

제7조(회의록) 교무회의는 회의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의 날인을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의 제6조(회의)는 2024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4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.